

대구고등법원 2021. 10. 13 선고 2021나21938 판결 [계약금반환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구고등법원 2021. 10. 13 선고 2021나21938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21. 2. 16 선고 2020가합20201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

담당변호사 서일석, 김혜인

피고,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. 한국산업단지공단

2. 충북개발공사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, 이근웅, 송미란, 양연이

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. 2. 16. 선고 2020가합202016 판결

변론종결 2021. 9. 8.

판결선고 2021. 10. 13.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,0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3. 부대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,431,083,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3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'당심 수정 부분'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당심 수정 부분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권형관 판사 김규화